



자녀 양육비 안내서

비양육 부모용

본 안내서 가이드

소개 1

양쪽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행복, 건강, 안정을 부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OCSS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양육비 및 가정법원 2

양육비서비스사무국과 가정법원은 별도의 기관이며,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친자관계 성립 4

자녀 양육비 절차의 첫 단계 중 하나는 자녀의 부모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어머니(친부모라고도 함)가 출생증명서에 기재되고, 아버지 또는 다른 부모가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지명되거나 DNA 검사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본 절에서 설명하는 내용.

- 친자관계를 성립해야 하는 이유
- 친자관계를 성립하는 방법

법원 출석 8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절차에서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거주 자치구의 가정법원으로부터 법원 심리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본 절에서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법원에 명령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합의서 제출 방법
- 법원 심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
- 법원에 지참해야 할 문서
- 자진 출석하는 방법
- 자녀 양육비로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
- 저소득 비양육 부모가 더 낮은 양육비 부담 자격을 갖는 방법
- 심리 후 진행 상황

자녀 양육비 지급 14

법원 명령에 따른 양육비 의무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 본인이 직접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절에서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지불 방법 및 양육비수금부(SCU)의 정의
- 곤궁 심사 요청 방법
- 고용주가 해야 할 일
- 구직 관련 지원을 받는 방법
- 이사 또는 직장 변동 시
- 파산 신청 시
- 양육 부모에게 현금 또는 선물 제공 시
- 지급액 수령처

[비양육 부모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20](#)

[양육권 및 면접권 20](#)

[상황 변동 시 명령 변경 21](#)

부모 중 한 명이 재정적 상황이 바뀐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육비 명령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법원에 정정 합의서 제출 방법
- 법원에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
- 첫째 자녀가 21세가 될 때
- 정정을 위해 법원 심리에서 진행되는 상황
- 생활비 조정

[비양육 부모를 위한 부채 감면 프로그램 24](#)

[양육비 연체 26](#)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금액의 연체금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집행 및 자율적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자율적 행정집행 조치
- 액수 증액
- 세금 환급 상쇄
- 복권 당첨금 압류
- 은행계좌 압수(통상, 재산강제집행(PEX))
- 운전면허증 정지
- 신용평가기관 보고
- NYS 조세재무부에 위탁
-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거부
- NYC 전문직 면허 거부 또는 임시 부여

- 사법적 집행 조치
- 위반 청원
- 부모지원프로그램(PSP) 참여
- 형사 고소 회부

[양육비 명령 종료 32](#)

뉴욕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명령이 유효합니다.

[양육비 정보/케이스 지원 34](#)

본 절에서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온라인 자원
- 우편주소

[친자관계 인정서 36](#)

법원 출석 없이 자발적으로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 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서 견본 38](#)

법원 명령에 따른 양육비 명령의 내용과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용어집 40](#)

소개

소개

모든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쪽 부모가 함께 살지 않거나,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책임감 있게 보살피는 부모가 되기에 너무 늦을 때란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양육비서비스사무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 OCSS)의 양육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아동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국의 사명은 부모 모두가 자녀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행복, 건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자녀가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녀에게 커다란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OCSS는 비양육 부모(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고 양육비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양육 부모(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살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경우, 당국은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찾고, 다른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립하고, 소환장을 송부하고, 법원 명령에 따른 양육비 및 의료 지원을 수립하고, 해당 명령을 징수 및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서비스는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양육비를 받고 현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양육 부모는 OCSS에서 양육 부모를 대신하여 최소 \$500의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연간 소액 수수료 \$35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양육 부모는 아버지이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양육 부모이고 어머니가 비양육 부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다른 친척이 주 양육자이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비양육 부모인 가정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상의 정보는 모든 비양육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를 읽으시고, 양육비 절차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익혀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 내용은 자녀에게 최선의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케이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양육비 및 가정법원

가정법원(Family Court)과 OCSS를 같은 기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기관은 별개이며, 자녀 양육비 절차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합니다.

- 양육비서비스사무국(OCSS)은 뉴욕시 양육비 프로그램입니다. OCSS는 뉴욕시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산하 기관인 뉴욕시 인적자원관리부(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소속입니다. OCSS는 법원과 다릅니다. 법원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OCSS는 자녀 양육비 케이스 및 지급액을 관리합니다. 자녀 양육비 케이스는 양육 부모가 서명한 자녀 양육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를 알릴 때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발부되면 OCSS는 양육비 지급액을 추적관리 및 분배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액을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미납할 경우, OCSS는 자율적으로 행정집행 조치를 적용하여 미납 지급액을 징수합니다.
- 뉴욕주에서 양육비는 법원에 기반한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Unified Court System)의 일부이며 양육비 사안에 대한 정식 판결을 발부합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육비 명령 금액을 책정 및 변경하고, 자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지원 명령을 내리고, 보육 명령을 설정하고, 자녀의 법적 친부를 확립하는 친자관계 명령 수립이 포함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행정강제집행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사법적 집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

OCSS에는 부모가 법원 심리 전에 양육비 명령 금액에 대해 법원 이외의 OCSS 고객센터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합의서는 새로운 명령을 수립하거나 기존 명령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는 양육비 담당자와 상담하여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동시에 출석하거나 전화 통화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의서는 법원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 작성됩니다.
- 합의서는 승인을 위해 법원에 제출되며 동의 기반 명령으로 전환됩니다.
- 법원은 양쪽 부모가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 1차례 심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양육비 명령을 수립 및 수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부모친화적인 대안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친자관계 성립

친자관계 성립은 부모가 서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 또는 다른 부모의 법적 확인을 의미합니다. 친자관계는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십대 부모는 자신들의 부모 동의 또는 서명 없이도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를 성립해야 하는 이유

- 자녀에게 건강보험, 양육비, 사회보장, 군복무수당, 연금, 상속권, 가족 병력 조회 등의 혜택 제공 목적.
-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양쪽 부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기 위한 목적.
- 가정법원을 통해 면접권 또는 양육권을 요청할 권리 목적.
- 양육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자녀에게 의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의 미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상담받을 권리 목적.

친자관계를 성립하는 방법

자발적 친자관계 인정서

양쪽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자녀 출생 직후 또는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친자관계 인정서(Acknowledgment of Parentage, AOP)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시 병원에서 친자관계를 인정하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성명이 바로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의 해당란은 빈칸으로 남겨집니다.

자녀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OCSS 또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DOHMH)에 연락하여 자발적 절차를 통해 여전히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퇴원 후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성명이 포함되고 요청 시 자녀의 성(Last name)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 부모가 동시에 AOP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친자관계는 비양육 부모가 군 복무, 수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부모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AOP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OCSS로부터 DNA 검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린 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 법원에 양육비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 심리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질 것이므로 DNA 검사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친자관계 인정서(AOP) 취소

- AOP가 DOHMH에 제출된 후에는 법적 문서가 됩니다. 친자관계 성립에 관한 결정을 바꾼 경우, 법원에서 AOP 취소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OP 서명 당시 18세 이상이었다면,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AOP 서명 후 60일 이내, 또는
 - » 자녀 관련 법원 신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 AOP 서명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18세가 된 후 60일 이내, 또는
 - » 자녀와 관련된 소송에서 AOP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자녀 관련 법원 신청서에 답변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 해당 기한이 지난 경우, 법원에 친자관계 인정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 협박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양육 부모를 아버지로 확인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친자관계 성립

법원에서 자녀의 다른 부모를 친자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AOP 양식 서명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어머니가 현재의 남편이 자녀의 친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친부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부모 중 DNA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양육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아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자녀가 현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DSS가 법원에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nycourthelp.gov 에서 뉴욕주 DIY(직접 작성)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대화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부권(또는 친자관계)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예: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은 nycourts.gov의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심리 일자를 알려드리고 다음 과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법원 심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친자관계 명령이 발부되고 보건정신위생부에 접수됩니다.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성명이 포함되고 요청 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추정 친부 등재부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해당 정보는 뉴욕주의 법적 친부 기록을 보관하는 뉴욕주 추정 친부 등재부(Putative Father Registry, PFR)로 전달됩니다. PFR은 상속, 입양, 자녀의 친부에게 통지해야 하는 법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저비용 DNA 검사

- 생물학적 친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DNA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자녀가 출생한 병원의 출생등록담당자나 OCSS DNA 상담소에 929-221-5008번으로 연락합니다. 양육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양육비치안판사가 필요 시 DNA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판결을 위해 법정 출석한 상태라면, 직접 DNA 검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법원 심리 중에 요청해야 합니다.
- 저비용 DNA 검사를 위해 국가 인증 실험실로 의뢰해 드립니다. 면봉을 이용하여 양쪽 부모와 자녀의 볼 안쪽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검사로, 신속하고 통증도 없습니다.
- 다른 부모와 같은 날 실험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양육 부모가 18세 미만인 경우, 실험실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을 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험실에서 모든 샘플을 채취하고 약 2주 후에 우편으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이미 법원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DNA 검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 만일 DNA 검사를 통해 비양육 부모가 생물학적 친부가 아님이 증명되더라도, 양육비 지급 명령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리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부합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 법원 절차 이외에 DNA 검사를 받는 데는 양쪽 부모 모두 소정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법원 출두

양육비 명령은 법원에서 확정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 및/또는 자녀가 현금 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 중인 경우,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또는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이라고도 함)가 자동으로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금 보조금을 받는 양육 부모가 가족을 위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관련 협조가 요청됩니다.

양육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양육 부모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혜택 25% 축소
- Medicaid 상실 및
- 일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상실

양육 부모는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youtube.com/hranyc](https://www.youtube.com/hranyc)에서 “양육비서비스사무국”에 있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명령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합의서

제출 방법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법원에서 사용되는 양육비 표준 지침을 기반으로 하지만, 양육비서비스사무국(OCSS)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부모 또는 부모들이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법원 소송 절차의 대안이자, 우호적이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두 부모가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의서:

- OCSS 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부모가 필요 서류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승인된 일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심리 일정이 정해집니다.
- 통상, 양육비치안판사가 두 부모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동의 기반 명령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1회의 법원 출석이 요구됩니다.

법원 심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 법원에서나 양육비 절차 진행 중의 어떤 시점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은 형사법원(Criminal Court)과 별개이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친자관계 또는 양육비에 대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우편 또는 대면으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심리 기일, 시간, 장소가 포함되며, 작성해야 할 소득 및 지출 명세서와 심리 출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도 포함됩니다.
- 법원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 및 양식 작성법에 대한 지침은 가족법률상담(Family Legal Care) 웹사이트, familylegalcare.org에서 확인하거나, [youtube.com/hranyc](https://www.youtube.com/hranyc)에서 양육비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양육비치안판사는 양쪽 부모의 증언을 듣고,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뉴욕주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양육비 명령 금액을 책정합니다.
- 가정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 및/또는 자녀가 현금 보조금을 수령 중인 경우, 변호사가 사회복지부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이 관련된 경우, 양육비 서비스 요청 신청서가 양육 부모가 아닌 사회복지부를 통해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

- 비양육 부모는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연락하여 날짜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충분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치안판사는 결석판결명령을 발부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석판결명령은 비양육 부모의 정확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비양육 부모의 지급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결석판결명령이 발부되면,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금액 삭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비양육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는 결석판결명령에 따라 규정된 대로 유지되며, 미지급된 양육비로 인해 강력한 강제조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친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 DNA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법원에 지참해야 할 문서

다음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십시오.

- 성명,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가 기재된 문서
- 소환장과 함께 제공된 작성된 재무공개진술서(Financial Disclosure Affidavit)(<https://bit.ly/FinDisclosure>)([youtube.com/hranyc](https://www.youtube.com/hranyc)에서 OCSS 동영상 “재무공개진술서 양식 작성법(1부 및 2부)” 확인)
- 주소 증빙
- 현재 또는 가장 최근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건강보험증
- 소득 및/또는 혜택 증빙:
 - »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 » W-2 양식
 - » 고용 및 급여를 확인하는 고용주 서신
 - » 가장 최근의 세금 환급 사본, 첨부 서류 포함
 - » 사회보장 및 기타 장애 수당
 - » 실업보험 수당
 - » 은행 거래내역서
 - » 부양 중인 다른 자녀 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증빙서류
 - » 가계 및 사업 비용, 미납 청구서 및 대출 증빙

양육비 심리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milylegalcare.org 를 참조하십시오. 문의 사항이나 전화 상담 예약을 요청하려면 dcse.cseweb@dfa.state.ny.us로 OCSS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케이스 번호, 공급한 사항,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기재해 주시면, OCSS 고객센터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자진 출석하는 방법

법원 심리 동안,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치안판사가 본인의 발언 내용을 경청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법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간 엄수.
- 긴 바지, 깃과 소매가 있는 셔츠 등 적절한 복장 착용.
-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목록으로 준비해 둬.
- 차례가 되면 발언하기.
- 양육 부모에게 직접 말하기 금지.
-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발언함.

자녀 양육비로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

뉴욕주 양육비표준법(Child Support Standards Act, CSSA)은 기초 양육비를 부모 소득에 대한 고정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살았을 경우 자녀가 누렸을 동일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이 \$163,000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본 비율이 적용됩니다. 합산 소득이 \$163,000를 초과할 경우, 양육비치안판사가 가이드라인 비율 사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양육비 전액 설정에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법원 명령에 대한 추정액은 OCSS 웹사이트, nyc.gov/hra/ocss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양육비 명령 액수 산정 방법

기본 양육비 금액은 뉴욕시 세금, 사회보장 및 Medicare 공제액, 다른 가족에게 실제로 지급된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차감한 총 소득의 일정 비율입니다. 또한 명령에 관계된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소득에는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 근로자 산재보험, 장애 수당, 실업급여, 사회보장 지급액 등 여러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현금 보조금과 SSI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	%
1	17%
2	25%
3	29%
4	31%
5+	35% 이상

예를 들어, 양육비표준법(CSSA)에서 인정하는 공제 후 연 소득이 \$35,000이고 1명의 자녀를 둔 경우, 기초 양육비 명령 금액은 주당 약 \$115입니다. 같은 가족에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명령 금액은 주당 \$168로 증액됩니다.

기본적인 의무 금액 외에, 양육비 명령에는 의료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금, 기본부담금 등 자녀의 의료 비용을 의미합니다. 의료 지원 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쪽 부모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부모 중 자녀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경우, 자녀를 가입시키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근로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는 반드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명령서에는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교육비와 주간 돌봄 비용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보통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쪽 부모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보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과 보육은 모두 기본적인 양육비 명령 금액에 추가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명령에서 보육을 제외해야 합니다.

명령이 발효되는 시점

모든 양육비 명령의 발효일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이며, 법원에서 명령이 성립된 날짜나 비양육 부모의 상황이 변경된 날짜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신청서가 10월 1일에 제출되었고 12월 5일 심리에서 주당 \$115의 양육비 명령이 성립된 경우, 비양육 부모는 10월 1일부터 주당 \$115를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비양육 부모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와 명령이 발부된 날짜 사이의 기간인 소급 양육비라고 하는 금액으로 \$1,000를 지불할 의무를 갖고 법정을 나서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비양육 부모가 1월부터 자녀와 함께 살고 양육을 시작했지만 6월까지 양육 부모의 지위 명령을 종료(중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월부터 6월 사이에 납부 의무가 있는 자녀 양육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 비양육 부모가 더 낮은 양육비 부담 자격을 갖는 방법

양육비치안판사가 비양육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명령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리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정 정보를 준비해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연간 소득이 뉴욕주 자기 부양 준비금(Self-Support Reserve, SSR) 보다 낮을 경우, 양육비 명령은 매월 \$50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SSR과 연방 빈곤선 수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참조: <https://www.childsupport.ny.gov/dcse/pdfs/CSSA.pdf>
- 연 소득이 1인 연방 빈곤선 수준 미만인 경우, 자녀 양육비 명령은 매월 \$25로 확립될 수 있고, 연체액은 \$50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aspe.hhs.gov/topics/poverty-economic-mobility/poverty-guidelines>
-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양육비치안판사가 부모지원프로그램(Parent Support Program, PSP)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구직을 돕는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소득이 늘기 시작하면, 법원 심리를 통해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심리 후 진행 상황

-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면, 양육비 명령 금액과 지급을 시작하는 방법이 명시된 지급 지침서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대부분 우편으로 명령서 사본이 송부될 것입니다. 추후 법원에 다시 가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명령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양육비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령서 발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케이스 기록을 검토한 뒤 명령의 적합성과 변경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명령서 견본은 본 안내서의 뒷면에 제공됩니다.
- 명령이 양육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면, 지불해야 할 금액과 지불 방법을 명시하는 서신이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고,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정정이 필요한 경우, OCSS로 연락하십시오.

양육비 지불

지불 방법 및 양육비수급부(SCU)의 정의

자녀 양육비 명령에 따른 지불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 지급액을 차감하여 OCSS로 송부하라는 지침이 담긴 통지문이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 양육비 지급액은 연금, 군인 수당, 사회보장, 장애보험, 실업보험 등 다른 소득원에서 직접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액은 현금 보조금이나 SSI 혜택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명령서에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급여에서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비용을 차감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가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

1. **비양육 부모(NCP)로 직장이 있는 경우**,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이 확정된 후 고용주가 급여에서 지급액을 차감할 때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뉴욕주 양육비처리센터(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로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인 경우**, 뉴욕주 양육비처리센터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3. **직장이 없는 경우**, 뉴욕주 양육비처리센터로 정기적으로 직접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 모든 지급 옵션은 <https://on.nyc.gov/paymentmetho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NYC 양육비 - ACCESS HRA(NYC Child Support -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PayPal을 사용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십시오: nyc.gov/childsupportmobile
- 시간을 어기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연체되어 급여 또는 다른 수입원에서 지급액이 바로 차감되는 경우, 연체가 해결될 때까지 정기 차감액이 50%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다른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액수 증액” 또는 “추가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 주당 \$115이고 이를 연체할 경우, 연체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금액 \$57.50(\$115의 50%)가 가산된 주당 \$172.50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곤궁 심사 요청 방법

- 비양육 부모의 압류금이 정기 명령 금액보다 일시적으로 50% 증액되는 경우, 뉴욕주는 이 추가금 지불로 인하여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연간 자기 부양 준비금보다 낮아져 곤궁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당해연도 자기 부양 준비금 금액은 <https://childsupport.ny.gov/dcse/pdfs/CSSA.pdf>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 매달 \$300인 경우, 추가 금액 \$150을 더하면, 매달 총액이 \$450가 됩니다. 추가 \$150로 연소득이 자기 부양 준비금 아래로 감소되는 경우, OCSS 고객센터 방문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dcse.cseweb@dfa.state.ny.us로 이메일을 보내 “곤궁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재정 곤궁이 입증되는 경우 \$150의 추가 금액 중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으나, 자녀 양육비 명령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삭감 정정”을 통해 양육비 명령을 낮추려면, 고객센터 방문센터 직원에게 MOTs(조건부명령정정)를 통한 합의에 대해 문의하거나 명령이 확정된 법원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

고용주는 법률에 의거해 법원 명령에 의한 양육비와 의료 지원비를 비양육 부모의 급여에서 차압해야 합니다. 양육비 및 의료 지원비에 대한 급여 차감액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이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양육비 공제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뉴욕주 양육비 상담전화인 888-208-4485번으로 전화해 옵션 2(고용주 및 소득 원천징수자)를 선택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OCSS에 이메일 dcse.cseweb@dfa.state.ny.us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에 따라 고용주가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감 가능한 최대 금액은 가처분 소득(연방세, 주 정부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 Medicare 공제액을 차감한 잔여액) 중 일정 비율입니다. 비율은 양육비 연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IWO에 대한 CCPA 가이드라인

2018년 8월 29일 또는 이후 날짜의 NYS 소득 원천징수 명령(IWO)의 경우

가처분 소득 중 인출 가능한 최대 비율...	...비양육 부모(NCP)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0%	적격 연체금 없음 (현재 양육비의 12주 이상에 상응함)
55%	적격 연체금 있음 (현재 양육비의 12주 이상에 상응함)

예:
비양육 부모가 하나의 양육비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양육비 명령 금액, 주당 \$200
- 연체금 없음
- 가처분 소득, 주당 \$300
- 주당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은 \$150임(\$300 x50%)

고용주가 \$200 전액을 송부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 급여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급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차감되는 금액이 CCPA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비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비 명령이 수립된 가정법원에 가서 삭감 정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액을 축소하더라도,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은 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령서 변경은 법원 절차를 통해서나 OCSS 고객센터 담당자를 통한 정정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직 관련 지원을 받는 방법

실업 상태이거나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양육비를 보낼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 **부모지원프로그램(PSP)**은 비양육 부모를 취업, 직업 훈련, 중재, 교육, 생활기술 수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에 연결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고 자녀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 케이스로 가정법원에 출석할 때 이 프로그램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 **TXT-2-Work**는 뉴욕 시민에게 최신의 구인 공고 정보와 구직 및 이력서 작성 요령을 보내주는 자발적 구직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자 형태로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TXT-2-Work 구독자는 일자리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구직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877877로 'JOBS'라는 단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NYC Business Link에서 검색하여 온라인 양식에 작성하여 가입하십시오.

- **Workforce1**은 NYC 중소기업 서비스부(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일자리를 준비시키고 연결해 줍니다.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에 위치한 Workforce1 커리어 센터(Workforce1 Career Centers)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Workforce1 위치는 nyc.gov/workforce1을 참조하십시오.
- **Jobs-Plus**는 뉴욕시 공공주택 거주자를 위한 검증된 고용 프로그램으로 평가, 취업 준비, 교육, 구직 지원, 사회적 지원 및 양육비 서비스 추천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프로그램 추천은 OCS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훈련 및 모든 현재 고용 옵션은 <https://on.nyc.gov/jobsandtrainin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cse.cseweb@dfa.state.ny.us

이사 또는 직장 변동 시

이사를 하게 되면 케이스와 관련해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OCSS에 통지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이직해도, 새로운 고용주에게 자녀 양육비 급여 공제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OCSS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면 미납된 양육비 채무가 발생하고 강력한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주소가 없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파산 신청으로 현재 및 기한이 지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는 특정 상황에서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미 양육비 명령이 있는 경우, 현재 양육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계속됩니다. 파산 유형(즉, 파산 조항)에 따라 기한이 지난 양육비 징수가 계속되는지, 어떤 집행 조치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파산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양육비 명령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에게 현금 또는 선물 제공 시

- 양육비수급부(Support Collection Unit, SCU)를 통한 지불 가능 양육비 명령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현금 또는 비현금)은 양육비 의무 지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금전은 양육비 계정에 입금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금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양육 부모는 직접 양육비 지급금을 받고 NYC 인적자원관리국(HRA)에 해당 지급금을 보고하지 않으면 복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육 부모에게 제공하는 의복, 기저귀 및 기타 물품은 선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자녀 양육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수령처

- 양육 부모 및/또는 자녀가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이 가족은 매달 징수되는 현재 양육비 중 최대 첫 \$100(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법원 명령에 명시된 정당한 금액입니다.) 이를 패스 쓰루(Pass-through) 또는 보너스 수당(Bonus payment)이라고 하며, 이는 현금 혜택에 더하여 받는 추가 금액입니다. 보너스 수당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수령한 현금 혜택에 대해 사회복지부(DSS)로 환급됩니다.
- 예를 들어, 양육 부모에게 자녀가 한 명이고 현금 보조금 혜택으로 \$500를 받으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명령은 \$150이고 \$100가 지급된 경우, 양육 부모는 총 \$600(\$500 혜택과 \$100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 가족의 현금 보조금이 중단된 경우, 자녀 양육비 명령은 양육 부모가 중단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현재 양육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모든 금액은 양육 부모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경우에 따라, OCSS에서는 가족이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던 시점부터 지급되었어야 하는 연체된 양육비를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 양육 부모가 현금 보조금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모든 금액은 양육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 자녀 양육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보고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소비하는 지출”에 따르면, 세전 소득이 \$59,200 미만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신생아에서 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1,450로 추산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

비양육 부모는 뉴욕주 비양육 부모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뉴욕주 세금 환급서와 세금 양식 IT-209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on.nyc.gov/4dsyL9T>를 참조하십시오.

양육권 및 면접권

양육비 심리에서 양육권 및 면접권 명령은 확정될 수 없으며, 자녀 양육비 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들에게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양육 부모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불화를 해결하고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 명시된 무료 및 저비용 중재 제공자를 참조하십시오.

부모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양육권 및 면접권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녀에 대한 공식적 양육권을 확립하거나 면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양육비 케이스와는 별도의 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양육비 명령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점을 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십시오. 심리에서 판사나 조정인은 부모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양 부모가 합의에 도달할 기회이며, 이 합의는 법원 명령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모는 법정에 다시 출석해 판사나 조정인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 서비스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목록은 온라인, bit.ly/MediationBrochu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다음 기관에 연락해 무료 또는 저비용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및 교육 센터(CENTER FOR MEDIATION AND TRAINING):** 212-799-4302(모든 고객, 시간당 요금)
- **커뮤니티 중재 서비스(COMMUNITY MEDIATION SERVICES):** 718-523-6868(Queens 주민)
- **중재 및 분쟁해결 기관(INSTITUTE FOR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718-585-1190(Bronx 주민)

- **뉴욕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hrasupport@nylag.org(저소득 의뢰인)
- **뉴욕평화기관(NEW YORK PEACE INSTITUTE):** 212-577-1740(Brooklyn 및 Manhattan 주민)
- **부모 지원(PARENT HELP):** 800-716-3468(별거 중인 부모를 위한 무료 비밀 전화상담 서비스)

상황 변동 시 명령 변경

법원에 정정 합의서 제출 방법

양육비 명령 변경을 위한 장기간의 법원 절차의 대안은 양 부모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OCSS 고객센터 방문센터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조건부명령정정(Modifying Orders Through Stipulation, MOTS)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양측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동의 기반 양육비 명령을 내리기 위한 한 번의 간단한 법원 심리 출석만이 필요합니다. 법원 심리는 양육비치안판사에게 정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양측 모두 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를 동의 기반 명령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MOTS는 양육비 표준 지침과 계산을 사용해 양쪽 부모에게 양육비 의무 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하고, 합의에 이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MOTS는 부모에게 명령을 정정하기 위한 지원적이고 우호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에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

자녀 양육비 명령은 심리 당시에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자녀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의 정정(변경)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변동되어(더 이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받기 시작한 경우 등) 자녀 양육비 명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양육비 심리를 진행한 법원에 즉시 찾아가 삭감 정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양육 부모가 nycourthelp.gov에서 뉴욕주 DIY(직접 작성)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양육비 정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서명한 뒤,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심리 일자를 알려드리고 다음 과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양육 부모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OCSS에서 양육 부모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본인의 케이스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명령이 이행, 최종 수정, 조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함.
- 명령이 이행, 최종 수정, 조정된 후 부모 중 한 명의 총소득에 15% 이상의 변동이 발생함. 소득 감소의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소득 감소를 주장하는 부모는 반드시 본인의 학력, 능력, 경력에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
- 수감된 부모의 경우, 수감의 사유가 양육비 미지급 또는 양육 부모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상황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한 것일 때 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는 2010년 10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명령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자녀가 21세가 될 때

- 하나의 자녀 양육비 명령에 1명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의무 금액이 배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부양 자녀마다 일정 금액이 배정됨을 의미합니다. 첫째 자녀가 21세가 되면, OCSS는 해당 자녀에게 할당된 금액만큼 자녀 양육비를 자동으로 삭감합니다.
- 명령 금액이 배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양육 부모는 첫째 자녀가 21세가 될 때 법원에 삭감 정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립한 자녀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 뉴욕주 이외 지역에서 양육비 명령이 수립된 경우, 면제 일자는 자녀가 21세가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 법원 심리에서 진행되는 상황

-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 일정이 정해집니다. 비양육 부모는 본인의 현 수입과 지출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양육비치안판사는 뉴욕주 양육비표준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를 검토하고 명령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명령 금액의 변동은 상황에 실제 변화가 생긴 시점이 아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 소급됩니다.

생활비 조정

- OCSS는 케이스의 조건이 부합할 시,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을 통해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COLA는 식품, 의류, 주거, 교통, 연료 및 의료비와 같은 품목의 가격을 추적하는 전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의 연간 변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명령서 수립 또는 최종 정정일로부터 CPI-U의 연간 증액분이 최소 10%에 달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 명령서 금액에 COLA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는 COLA가 명령 금액에 추가되기 전에 통지를 받으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COLA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명령 금액을 검토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정정 심리 일정이 잡힙니다. 양육비치안판사가 뉴욕주 양육비표준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령 금액의 변경,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양육 부모를 위한 부채 감면 프로그램

OCSS는 뉴욕시 사회복지부(DSS)에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 부채(연체금)를 감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SS에 지급해야 할 부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OCSS에 dcse.cseweb@dfa.state.ny.us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체금 한도란 가정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정부(DSS)에 지급해야 하는 누적 양육비 채무를 \$50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 NYC DSS에 연체금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종이거나 유효한 양육비 명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체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수준 이하일 때 발생했어야 합니다 (<https://aspe.hhs.gov/topics/poverty-economic-mobility/poverty-guidelines> 참조). 과거 소득 증빙(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임금 명세서나 수감 증빙 또는 혜택 수령 증빙(예: 현금 보조금)을 요청합니다.

연체금공제프로그램(ARREARS CREDIT PROGRAM, ACP)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DSS에 지급해야 할 연체금을 최대 3년 동안 \$5,0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양육비 명령이 있는 비양육 부모와 연체금 지급 의무만 있는 비양육 부모 모두 ACP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명령은 DSS 또는 양육 부모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DSS에 지급해야 할 연체금만 감면됩니다.

자격 대상:

- ACP 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1년 동안 매달 전액을 지불합니다.
- 자격을 갖춘 비양육 부모는 DSS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 연체금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연간 \$5,00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모성공프로그램(PARENT SUCCESS PROGRAM)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를 밟도록 장려합니다. 부모성공은 뉴욕시 DSS에 부채를 갚아야 하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갖춘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했다는 확인이 있으면 NYC DSS 부채를 최대 \$7,5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환 프로그램(PAY IT OFF)은 비양육 부모가 뉴욕시 DSS에 대한 양육비 부채를 두 배 빠르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하면 OCSS는 DSS 부채를 두 배까지, 또는 DSS에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연체금 총액까지 감면시켜 줍니다.

이러한 부채 감면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dcse.cseweb@dfa.state.ny.us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사무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on.nyc.gov/contactocss> 참조).

OCSS에서 제공하는 부채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yc.gov/ocss-debt-reduction을 참조하십시오. NYC 양육비 -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부채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nyc.gov/childsupportmobile.



양육비 연체

OCSS는 지급된 양육비 금액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적합니다.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제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OCSS의 의무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여러 가지 집행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취하기 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의 오류를 주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통지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Youtube.com/hranyc](https://www.youtube.com/watch?v=hranyc)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집행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은 https://childsupport.ny.gov/dcse/enf_actions.html을 참조하십시오.
- NYC 양육비 -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강제집행 이의제기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nyc.gov/childsupportmobile.
- 현금 보조금 또는 사회보장보험(SSI)을 수령 중인 경우 특정 강제집행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 단일 케이스에 동시에 여러 강제집행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OCSS는 법원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비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집행 조치를 위해 가정법원으로 케이스가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 행정집행 조치

액수 증액

양육비 지급이 연체될 경우, 자녀 양육비는 정기 명령 금액보다 50%까지 일시적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심리일이 아닌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 소급되어 지급해야 하므로, 신규 명령의 경우 즉시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상쇄

연방 소득세 또는 주정부 소득세 환급액이 있는 경우, 연체된 자녀 양육비 지급을 위해 환급액이 OCSS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세금 환급 상쇄는 \$50 이상이 연체된 경우 발생합니다.
- 연방 세금 환급 상쇄는 지급 연체가 최소 3개월 이상 이루어지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500(DSS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150)에 도달하면 이루어집니다.
- 세금 상쇄 금액은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연도에 결정됩니다. 세금 환급이 일어난 시점에 비양육 부모의 모든 채무가 상환된 경우, OCSS는 IRS 또는 뉴욕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로부터 받은 환급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송금합니다. 환급액 입금은 환급금이 OCSS로 전달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8주가 소요됩니다.
-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IRS 및/또는 뉴욕주 조세재무부에 피해 배우자(Injured Spouse) 양식을 제출하여 환급금 중 자신의 몫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SS는 6개월 동안 IRS 환급액을 보류하여 피해 배우자가 세금 환급액 중 자신의 몫을 청구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환급액 전액이 비양육 부모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복권 당첨금 압류

뉴욕주 복권에 \$600 이상 당첨되고 양육비 연체금이 \$50 이상인 경우, 당첨금이 OCSS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에서 양육비 연체액이 차감되고 나면 연체시킨 부모에게 나머지 당첨금을 언제 찾을 수 있는지 통지해 드립니다. 공식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은행계좌 압수

(통상 재산강제집행[PEXI])

비양육 부모가 2개월 이상 현재 양육비를 연체하여 연체액이 \$300를 넘는 경우, 비양육 부모의 은행계좌(저축, 체크, 금융 시장, 양도성 예금 증서, IRA) 및 기타 금융 자산이 동결되고 OCSS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급여 공제를 통해 자동으로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잔액이 \$3,000 이상인 은행 계좌는 동결됩니다.
- 급여 공제를 통해 자동으로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잔액이 \$25 이상인 은행 계좌는 동결됩니다.

- 은행 계좌의 자금이 사회보장보험(SSI), 현금 보조금, 군 복무로 인한 재향군인청 장애수당,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서 나온 경우, OCSS에서 해당 자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은행 계좌인 경우, 일부 은행은 OCSS의 요청 금액 전체를 해제합니다. 공동 계좌주가 모두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 양육비 연체액에 대해 계좌 잔액의 절반을 해제해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지

자녀 양육비 연체액이 현재 양육비 명령 금액의 4개월분 이상이고, 지급이 급여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정지됩니다. 사회보장보험(SSI) 또는 현금 보조금을 받는 비양육 부모의 경우 운전면허증 정지에서 면제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금 전액 납부
- 고용주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고용 정보 제출
- 법원 명령에 따른 금액과 연체금의 50%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OCSS와 지급 약정 체결
- 소득이 뉴욕주 자기 부양 준비금 미만임을 증명:
<https://www.childsupport.ny.gov/dcse/pdfs/CSSA.pdf>
- 정지가 시행되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운전면허증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보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로 \$1,000 이상을 연체하거나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먼저 도래하는 상황에서 비양육 부모의 이름이 주요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 CRA)에 제출됩니다. 이름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부모의 신용 보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신용카드 발급, 담보대출 또는 기타 유형의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YS 조세재무부에 위탁

연체액이 현재 양육비 명령 금액의 4개월분을 초과하고, 금액이 \$500 이상이며, 지난 45일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한 자녀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산 파악 및 압류를 위해 해당 케이스가 뉴욕주 조세재무부로 회부됩니다. 사회보장보험(SSI) 또는 현금 보조금을 받는 비양육 부모는 이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거부

비양육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채가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연방기관)에 보고된다는 통지가 사전에 전달됩니다. 연체된 자녀 양육비가 \$2,500 이상인 경우 국무부는 신규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합니다. OCSS와 자녀 양육비 연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NYC 전문직 면허 거부 또는 임시 부여

신청자가 최소 4개월분에 해당하는 현재 양육비를 연체한 경우, 뉴욕시 전문직 면허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신청이 거부되거나 6개월의 임시 면허가 부여됩니다. 뉴욕시 면허발급 기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사안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 소방국(Fire Department)
- 뉴욕 경찰청(New York Police Department)

신청자가 면허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연체액을 지급하거나 OCSS와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 부채로 인해 NYC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151 West Broadway 에 있는 OCSS 고객센터 방문센터 방문, 또는
- 전화상담을 요청하려면 성명, 케이스 번호,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시간대를 포함해 dcse.cseweb@dfa.state.ny.us로 OCSS에 이메일 발송

사법적 집행 조치/위반 청원

위반 청원

행정적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양육 부모나 OCSS(DSS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가 가정법원에 위반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심리로 다음이 초래됩니다.

- **현금 지급 판결:** 자녀 양육비 연체액이 법원에 의해 특정 금액으로 정해지고, 완납 시까지 연 9%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심리로 다음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LIEN(선취특권):** 비양육 부모의 재산이 매각 또는 양도되기 전에 자녀 양육비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산에 선취특권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예치:** 비양육 부모는 향후 양육비를 위해 현금을 예치(최대 3 년분에 해당하는 양육비 액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양육비가 이 예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금 채권(Cash Bond) 또는 현금 보증(Cash Undertaking)이라고도 합니다.
- **체포/감금:** 비양육 부모가 위반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특정 경우에 대해서, 비양육 부모는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미지급이란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취업을 회피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정부 발급 전문직, 사업, 직업 면허 정지:** 가정법원은 현재 양육비 명령 금액의 4개월분 이상의 양육비를 연체한 비양육 부모가 소지한 주정부 발행 면허가 정지되도록 면허 발행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등록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직업으로는 이발사, 물리치료사, 변호사, 의사 등이 있습니다.

부모지원프로그램(PSP) 참여

비양육 부모가 실업 상태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치안판사는 비양육 부모가 일자리를 구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PSP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 DOP)에 회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회부

OCSS는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상당한 연체금이 있고, 그 밖의 강제집행 조치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미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또는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에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 종료

뉴욕주에서는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보통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법원에서 다른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21세가 지나도 교육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명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독립함. 자녀가 집을 떠나 자립하거나, 혼인 또는 입대한 경우입니다.
-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권을 획득함. 이때는, 상대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경우.

현재의 양육비 명령이 종료되더라도,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연체된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 부모나 사회복지부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채를 모두 청산할 때까지 지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정보/케이스 지원

양육비 프로그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양육비 케이스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새 고용주나 주소 변경과 같은 추가 정보를 OCSS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HRA 양육비서비스사무국의 고객센터에 이메일 (dcse.csweb@dfa.state.ny.us) 발송.

이메일에 성명, 양육비 케이스 ID, 생년월일 기재. 담당자가 충분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메일에 구체적인 제목과 자세한 내용 기재.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예약하려면 이메일 (dcse.csweb@dfa.state.ny.us) 발송.

이메일에 성명, 양육비 케이스 ID, 생년월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 전화번호, 연락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기재. 이메일 제목에 "Requesting a Customer Service Appointment(고객서비스 예약 요청)"라고 기재. 전화 예약 요청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회신.



HRA OCSS 고객센터 방문센터 또는 가정법원 사무국 방문. 위치 확인:

<https://on.nyc.gov/contactocss>



양육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RA OCSS 웹사이트, <https://nyc.gov/hra/ocss> 방문.



뉴욕주 양육비 헬프라인에 888-208-4485로 전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OCSS
PO Box 830
Canal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13

온라인 자원

뉴욕시 양육비서비스사무국(OCSS)
nyc.gov/hra/ocss

양육비 관련 동영상 시청
youtube.com/hranyc

뉴욕시 재정역량강화사무국(OCSS)
무료 재무 상담 및 교육
nyc.gov/ofe

뉴욕주 양육비서비스부
내 계정 정보 조회*
childsupport.ny.gov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nycourts.gov

NYC Access HRA 양육비 모바일 앱
<http://www.nyc.gov/childsupportmobile>

친자관계 인정서

LDSS-5171 (Rev. 04/21)

친자관계 인정서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입력 또는 정자체 기재)

등록 지구 _____ 병원 코드 _____ 등록 번호 _____

서명된 곳에 체크: 병원 양육비 프로그램 사무소 출생 호적담당자 기타

자녀 _____

이름 _____ 중간 이름 _____ 성 _____

성별 _____ 생년월일(MM/DD/YYYY) _____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기타 _____

출생 장소 _____ 출생 도시 _____ 출생지 카운티/자치구 _____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이미 제출했으나,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다음 칸 기재:
기존 출생증명서상의 성 _____ 신규 성 _____

저희는 이 친자관계 인정서에 서명 행위는 자발적 의사이며, 법원 심리 후 작성된 친자관계 명칭과 동일한 효력과 효과로 자녀의 친자관계를 성립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제공 의무를 포함함을 이해합니다. 단, 이 친자관계 인정서가 출생증명서가 제출된 호적담당관에 제출된 경우에만 친자관계 인정서가 상속권과 관련하여 그러한 효력과 효과를 갖습니다. 저희는 법적 권리(결혼 허가 포함) 획득, 국제 방문, 친자관계 인정서 서명의 결과에 대한 서면 및 구두 통지를 받았으며, 통지된 내용을 이해합니다. 저희에게 서면 통지서가 제공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래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친생부모

이름 _____ 중간 이름 _____ 성 _____

거리 주소 _____ 층수/아파트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생년월일(MM/DD/YYYY) _____ 소셜시큐리티번호 _____ 출산 당시 혼인했습니까? 예 아니요

본인은 위에 명시된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 인정서에 동의하며, 아래에 명시된 사람이 유일하게 가능한 다른 유전적 부모이거나 의도된 부모이며, 자녀가 의학적 도움을 받은 생식을 통해 임신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서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입회인란 (두 명의 입회인 필수; 입회인은 부모 중 누구와도 관련이 없어야 함) 입회인 서명 _____ 입회인 정자체 성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입회인 서명 _____ 입회인 정자체 성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다른 부모

이름 _____ 중간 이름 _____ 성 _____

거리 주소 _____ 층수/아파트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출생 도시 _____ 출생지 주/도 _____ 출생 국가 _____

생년월일(MM/DD/YYYY) _____ 소셜시큐리티번호 _____ 귀하는 아동의 유전적/생물학적 부모입니까? 예 아니요

본인은 위에 명시된 아동의 유전적 또는 의도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입회인란 (두 명의 입회인 필수; 입회인은 부모 중 누구와도 관련이 없어야 함) 입회인 서명 _____ 입회인 정자체 성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입회인 서명 _____ 입회인 정자체 성명 _____ 날짜(MM/DD/YYYY) _____

For Official Use Only

The above Acknowledgment of Parentage is hereby filed with the _____ registrar on _____

If this document is to amend a birth certificate, I certify that I have examined the original record this seeks to amend and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matches. There are no omissions or apparent errors that render it unacceptable for amending the birth record. This document is therefore approved.

State Registrar/Deputy City Registrar signature _____ Date (MM/DD/YYYY) _____

LDSS-5171 (Rev. 04/21)
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Pursuant to Section 4135-b of Public Health Law

친생부모

성명 _____

거리 주소 _____

층수/아파트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여기에 친생부모의
우편주소 정자체 기재

다른 부모

성명 _____

거리 주소 _____

층수/아파트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여기에 다른 부모의
우편주소 정자체 기재

생식세포 기증자(해당하는 경우)

성명 _____

거리 주소 _____

층수/아파트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여기에 생식세포 기증자(있는 경우)의
우편주소 정자체 기재

양육비 명령서 견본

사건 일람표 번호: F-XXXX-XX
4-7

파트 A F.C.A. §§ 413, 416, 433, 438, 439, 440, 442-447, 471; Art.5-B, 법원 심리를 관장하는 가정법원법
4-7 11/2002 양식 번호 및 발급일
뉴욕주 가정법원의 조항에 따라, Richmond 카운티, 100 Richmond Terrace, Staten Island, NY 10301에서 2004년 10월 4일에 개정됨
법원 주소와 심리일

파트 B 출석: 가정법원, 양육비치안판사 양육비 처리 사안
양육 부모, SSN: XXX-XX-XXXX, 신청인,
- 대- 관련 당사자
비양육 부모, SSN: XXX-XX-XXXX, 피신청인.
파일 번호: XXXXX
사건 일람표 번호: F-XXXX-XX
CSMS 번호: XXXXXXXXX
자녀 양육비 케이스 및 법원 식별 정보
양육비 명령 명령 종류

파트 C 통지: 이 명령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상 비협조 또는 모독죄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행한 전문직, 거래, 사업, 직업 면허와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면허, 인가증이 정지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개인 자산에 선취권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명령서를 법원에서 또는 직접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명령서 발송 이후 35 이내에 법원에 이 명령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2일에 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기 신청인은 **비양육 부모**가 다음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자녀의 성명 XX/XX/XXXX
비양육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았고, 본 신청서에 대응하여 신청서상의 양육비 명령과 기타 구제 조치가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울러 **비양육 부모**는 신청서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케이스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거쳐 관련 증거와 증언을 심리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비양육 부모**는 비양육 당사자로서, 다음 자녀에 대해 기본 자녀 양육비 의무액 중 비례 분담액 (Pro rata share)으로 주당 \$XX.XX(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 성명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
더불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기본 양육비 의무 금액 중 비례 분담액이 정당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고용 상태**
케이스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거쳐 관련 증거와 증언을 심리한 결과,
양육비 명령 시행일(본인의 시행일과 다를 수 있음)
이 명령서는 2005년 1월 28일부로 **비양육 부모**는 다음 사람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양육 부모**에게 주당 \$XX.XX(를) 지급할 충분한 능력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05년 1월 28일부로 양육비수급부를 수신처로 하여 보충 지불 수표 또는 우편환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비양육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해당 지급을 시작하라는 명령과 판단을 내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사람

해당란에 체크:
 명령서가 발송됨(발송일 및 수신자 기재): _____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함(날짜와 전달자 기재): _____

성명	소셜시큐리티 번호 #	생년월일	금액
자녀들			
자녀		XX/XX/XXXX	주당 \$XX.XX
총 양육비:			

파트 E 계속 이 명령서는 지급자, 양육 당사자, 기타 개인 당사자는 양육비수급부에 다음 정보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알릴 것을 명령합니다: 거주지 및 우편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당사자들의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 혜택의 중단이나 건강보험사 또는 보험료 변경, 기존 또는 신규 혜택의 보장 범위 및 이용 가능 여부 전반
거주지, 고용 등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을 기관에 통지.

이 명령서는 민사실무법과 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제5241조 혹은 5242조 또는 기타 법이 정한 다른 방식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함을 명령합니다.

비양육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경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경비/수령자 지급 지급 방법
미환급 건강 관련/ 양육 부모 XX % SCU를 통해
양육 부모 XX % 직접 지급
기본 양육비 명령 금액에 더해지는 비용:
• 의료비
• 보육비
• 교육비

양육비수급부(SCU)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모든 지급금은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함을 추가로 명령합니다. Support Collection Unit, PO Box 15363, Albany, NY 12212- 5363;
양육비가 급여에서 공제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낼 곳

파트 F 사회보장법(Social Services Law) 제111-b(4-a)조에 근거하여, 양육비수급부는 본 명령서의 사본을 뉴욕주 양육비 명령 케이스 등록부(Case Registry of Child Support Orders)에 즉시 제출할 것을 추가로 명령합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28일에 인상될 때까지 2004년 10월 8일부터 주당 \$XX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추가 명령입니다.
법원 판결 요약

참고: (1) 본 양육비 명령서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아래 (2)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명령서가 발부, 최종 정정 또는 최종 조정된 이후 이십사(24)개월 경과 시 양육비수급부의 지시에 따라 생활비 조정 신청에 의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수급부의 지시에 따른 생활비 조정 신청에 따라, 변동된 명령서가 당사자에게 발송되고 해당인이 생활비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삼십오(35)일 이내에 조정된 명령서에 명시된 법원에 서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면 이의제기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리 일정을 정하고 당사자는 출석하여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참고하고 양육비표준법(CHILD SUPPORT STANDARDS ACT)을 준수하여 양육비 명령 금액을 조정합니다.
생활비 조정 (COLA)

파트 G (2) 가족 지원을 받는 자는 해당 명령서가 발부, 최종 정정 또는 최종 조정된 지 이십사(24)개월 이후에 양육비수급부의 지시에 따라 양육비 명령서의 검토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판결 통지문은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3)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 제443절에 따라 특정 당사자가 양육비수급부가 조정된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는 현재 거주지 주소의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거나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조정된 명령에 포함된 양육비 의무 금액은 당사자가 조정된 명령서의 사본을 수신했는지에 관계없이 검토 및 조정이 발생한 날 또는 명령서 시행일 이후에 양육비 명령서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가 지급 기한이 됩니다.

날짜: 2004년 10월 4일
기입란
가정법원, 양육비치안판사
양육비치안판사의 성명 및 날인

해당란에 체크:
 명령서가 발송됨(발송일 및 수신자 기재): _____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함(날짜와 전달자 기재): _____

양육비 관련 용어집

A

ABSENT PARENT(부재 부모): 자녀와 함께 살지 않으나 부양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비양육 부모, 비거주 부모, 법정 소송 시의 피신청인을 지칭하기도 함).

ACCRUAL(누적액): 연체된 양육비의 총액. ("연체액"이라고도 함).

친자관계 인정서(AOP): 법원에 가지 않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자녀의 친자관계(법적 부친)를 확인하는 양식. 반드시 부모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ADDITIONAL AMOUNT(추가 금액)(일명 액수 증액):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 채무 상황 의무 외에 소득 집행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

ADJOURNMENT(휴회): 향후 특정 날짜까지 심리를 일시적으로 연기함.

ADMINISTRATIVE PROCESS(행정 절차): 법원이나 판사가 아닌 OCSS에서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

AFFIDAVIT(진술서): 맹세 하에서 자발적으로 사실을 진술한 문서.

ALLOCATED CHILD SUPPORT ORDER(양육비 할당 명령): 자녀 한 명당 지불해야 할 금액을 기재한 명령서.

ARREARS(연체액): 지급 기한이 지났거나 미납된 양육비의 액수.

ASSIGNMENT OF SUPPORT RIGHTS(양육비 양도 권리): 현금 보조금 수령자가 현금 보조금 및 기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받은 모든 자녀 양육비를 주에 반환하도록 하는 합의 요건.

B

BASIC CHILD SUPPORT OBLIGATION(기본 양육비 지급 의무): 의료지원비, 보육비를 합산하기 전에(교육비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부모 소득에 대해 고정 비율로 책정된 양육비 명령 금액.

BONUS PAYMENT(보너스 수당): 양육비 명령이 수립된 현금 보조금 수령자는 지급되어야 하는 동일한 달에 수급된 양육비 중 매월 최대 \$100 (양육비를 받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스루 수당 참조.)

BURDEN OF PROOF(증명 부담): 당사자가 특정 쟁점에 대하여 상당한 근거를 갖춘 증거를 확보할 의무.

C

CASH ASSISTANCE(현금 보조금): 소득이 매우 낮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혜택으로 뉴욕시에서 인적자원관리국(HRA)이 관장. 현금 보조금은 EBT(전자급여부체)를 통해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CASH UNDERTAKING(현금 보증): 법원 심리의 결과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의 형태로 OCSS의 양육비수급부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양육비가 이 예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CHANGE OF CIRCUMSTANCES(상황 변동): 부상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법원의 양육비 명령에 따라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양육 부모의 재정 상황에 예기치 못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는 법원에 양육비 삭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CHANGE OF PAYEE(수령자 변경): 개인간 양육비 지급을 OCSS로 보내 금액 처리, 기록 관리, 배분,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CHILD SUPPORT STANDARDS ACT(CSSA, 양육비표준법): 기본 양육비 명령 금액의 계산 공식을 표준화하여 뉴욕주 전체에서 양육비 명령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1989년 통과된 법.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생활비 조정): 법원 심리 없이, 양육비 명령 금액을 인상함. COLA는 전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CPI-U)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식품, 의복, 주택 등의 일상 생활비 지출 추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CONCURRENT JURISDICTION(동시 사법권): 1개 이상의 법원이 양육비 명령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명령. 뉴욕주 대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CCPA, 소비자신용보호법): 소득에서 필수 원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연방법; 의무세 차감 후 순소득, 연체금, 재정 부양을 받는 추가 가족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COURT ORDER(법원 명령서): 법원이 발행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양육비 관련 법원 명령서에는 비양육 부모의 지급 주기, 금액, 기간, 양육비의 유형 등 강제 사항과 고용주가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CPI-U(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전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식품, 의류, 주택 등의 항목에 대한 물가를 연 단위로 파악합니다. 생활비 조정(COLA)은 CPI-U의 연간 변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CUSTODIAL PARENT(CP, 양육 부모):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부모, 친척, 또는 후견인.

CUSTODY(양육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다른 성인 중 누구와 거주해야 하는지를 수립하는 법적 결정.

D

DECREE(결정): 법원의 사법적 결정.

DEFAULT ORDER(기본 명령): 비양육 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소환 증빙이 제출되었을 때 발행되는 양육비 명령.

DELINQUENCY(체납): 지급 기한이 당도했으나 미지급된 양육비의 액수.

DEPENDENT(부양가족): 다른 사람의 양육하에 있는 자녀.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 대부분은 부양가족입니다.

DIRECT PAY ORDER(직접 지급 명령):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명령 금액을 양육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

DISBURSEMENT(지출): 의뢰인이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을 때 징수된 양육비 금액의 일부를 양육 부모 또는 사회복지부로 지급하는 행위.

DISMISSAL WITHOUT PREJUDICE(재소 가능 기각): 신청이 현재 기각되었으나 추후에 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 (예: 소환 서비스가 없는 경우)

DISMISSAL WITH PREJUDICE(재소 불가능 기각): 신청에 가치가 없어 케이스가 법원에서 완전히 기각되는 경우. 예: DNA 검사 결과 피신청인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DISPOSABLE INCOME(가처분 소득): 세금, Medicare, FICA, 연금 플랜 공제액이 차감된 후의 소득액.

DNA TEST(DNA 검사): 특정인이 자녀의 부모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 DNA의 샘플은 특수 제작된 면봉을 사용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볼 안쪽에서 채취합니다.

DOCKET NUMBER(사건 일람표 번호): 케이스 식별을 위해 법원에서 정한 번호.

E

Electronic Benefit Transfer(EBT, 전자급여이체):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OTDA)에서 수령자에게 현금 및 SNAP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혜택은 신분증과 PIN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MANCIPATED(자립):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소득원을 가지거나 복무 또는 혼인한 상태.

ENFORCEMENT(집행): 양육비 명령에 해당하는 양육비 또는 의료지원 의무액을 획득하기 위해 구제책을 적용하는 행위. 구제책의 예로 자산 압류, 운전면허증 정지, 미국 여권 거부 등이 있습니다.

ESTABLISHMENT(확립): 친자관계를 증명하거나 양육비 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 명령을 획득하는 과정.

F

FAMILY COURT SUPPORT SERVICES(FCSS, 가정법원양육비서비스): 지역의 비현금 지원 양육비 케이스의 접수를 담당하는 OCSS 소속 부서.

FAMILY SUPPORT ACT(가족지원법): 양육비 명령 금액이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도록 하고, 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 가정의 부양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 1988년에 통과된 법.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FPLS, 연방부모찾기 서비스): 전국 전산 위치 찾기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 정부에서 비양육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FPLS는 양육권, 친자관계, 양육비 성립 및 입양 및 가정 위탁 문제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FINANCIAL DISCLOSURE AFFIDAVIT(재무 공개 진술서): 자녀 양육비 케이스에서 부모에게 작성용으로 지급되는 문서로 재정, 급여, 지출 정보에 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녀 양육비, 의료 지원, 보육비 등 자녀 양육비 명령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INDINGS OF FACT(사실 소견): 양육비치안판사가 양육비 명령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기록 및 계산.

G

GARNISH(압류): 특정 개인의 임금 및/또는 자산 일부를 양육비 채무 지급과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 하는 법적 절차.

GOOD CAUSE(타당한 사유): 현금 보조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양육비에 협조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법적 사유.

H

HEARING(심리):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 자녀 양육비 심리를 처리하는 판사는 양육비치안판사입니다.

I

INCOME(소득): 급여, 커미션, 보너스,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 연금, 이자 등 소득원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정기적 임금. 현금 보조금과 SSI 혜택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INCOME WITHHOLDING ORDER(IWO, 소득 원천징수 명령):

양육비 지급액을 비양육 부모의 임금이나 기타 소득원에서 직접 차감하여 양육비수급부로 보내는 행정적 절차. 급여 원천징수, 압류, 임금 차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NTERCEPT(압류):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는 비급여의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식. 압류 대상이 되는 비급여 금액에는 세금 환급액,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INTERSTATE CASES(주간 케이스): 부양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여, 두 주가 양육비 케이스의 확립이나 집행에 함께 연관된 상황.

J

JOB CENTER(구직 센터): 현금 보조금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곳. 현장에서 구직, 교육, 배치, Medicaid, SNAP, 푸드스탬프와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CSS는 구직 센터로부터 양육비 프로그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의뢰인에 대한 위탁을 받습니다.

JUDGMENT(판결): 판사 또는 양육비치안판사의 공식 결정 또는 결론.

JURISDICTION(사법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사람과 특정 유형의 케이스에 대해 갖는 법적 권한.

L

LEGAL FATHER(법적 아버지): 법적으로 한 자녀의 친부로 인정되는 사람. 부모가 서로 혼인한 상태가 아닐 경우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LIEN(선취특권):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특정 자산이 매매 또는 양도되지 않도록 하는 청구.

LOCATE(찾기):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양육비 의무를 수립 또는 집행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를 찾는 과정.

LONG ARM JURISDICTION(확대 사법권): 한 주에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특정인에 대해 개인적인 사법권을 청구하도록 한 법적 규정.

LOTTERY INTERCEPT(복권 당첨금 압류): 미지급한 양육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의 복권 당첨금을 양육비집행국(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으로 전달하는 절차.

M

MEDICAL ASSISTANCE ONLY(MAO, 의료지원만 해당), 또는 MEDICAID ONLY(MEDICAID만 해당): 재정 지원이 아닌 의료지원의 형태로 수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

MEDICAL SUPPORT(의료지원): 양육비 명령서에 의료지원비가 포함되도록 한 법규.

MODIFICATION PETITION(정정 신청서): 기존 양육비 명령서의 내용 수정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공식적 서면 신청서.

MONEY JUDGMENT(현금 지급 판결): 공식 판결에서 양육비치안판사가 정한 특정 연체액으로 연 9%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현금 지급 판결은 카운티 서기관 사무실(County Clerk's Office)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N

NATIONAL MEDICAL SUPPORT NOTICE(NMSN, 국가의료지원 통지): 건강보험 보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보험이 제공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비양육 부모의 고용주에게 보내는 통지문.

NEW HIRE REPORTING(신규 채용 신고): 모든 고용주가 신규 채용된 직원을 뉴욕주 신규 채용 디렉터리(Directory of New Hire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 양육비 및 의료지원 의무를 급여 공제를 통해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NONCUSTODIAL PARENT(NCP, 비양육 부모):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주 양육자가 아닌 부모.

NOTARIZE(공증): 날인과 서명을 부착하여 법적 문서에 나와 있는 서명 등 특정 항목의 진위와 합법성을 공인하는 행위.

NUNC PRO TUNC(소급): 라틴어로 '과거로'를 의미. 명령서, 판결, 문서 제출일 등을 과거의 날짜로 변경함을 의미합니다.

O

OBJECTION(이의): 명령서의 특정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 청구. 명령서 수령 이후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OBLIGATION AMOUNT(의무 금액): 비양육 부모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금액.

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양육비서비스사무국): 뉴욕시 거주 가족들을 대상으로 양육비 명령의 획득과 집행을 담당하는 인적자원국 소속의 부서.

ORDER(명령): 양육비치안판사 또는 판사의 서명이 기재된 서면 지시서.

ORDER OF FILIATION(친자관계 명령): 법적 아버지임을 성립하는 법원 명령서.

ORDER OF PROTECTION(보호 명령): 부모 중 한 명이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지시.

ORDER ON CONSENT(동의 기반 명령): 특정 조치에 대해 양측에 의해 합의된 명령. 양육비 심리에서, 부모는 양육비표준법 가이드라인과 다른 명령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P

PARENT LOCATOR SERVICES(부모찾기 서비스): 자녀 양육비 케이스의 피신청인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주 정부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PARTY(당사자): 법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나 단체.

PASS-THROUGH PAYMENT(패스-쓰루 수당): 양육비 명령이 수립된 현금 보조금 수령자는 지급되어야 하는 동일한 달에 수급된 양육비 중 매월 최대 \$100(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수당 또는 '과세 불포함(Disregarded)' 양육비라고도 합니다.

PATERNITY OR PARENTAGE(부권 또는 친자관계): 친부라는 법적 결정. 부권 또는 친자관계는 양육비 또는 의료비 지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PATERNITY (OR PARENTAGE) PETITION(부권 또는 친자관계 신청서): 특정 자녀의 법적 아버지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적 조치를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 서면 신청서.

PAYEE(수령자): 자녀 양육비 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이나 단체. 예: 자녀의 할머니.

PAYOR(지급자): 지급을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나 비양육 부모의 대리인. 의무자라고도 합니다.

PETITION(신청서): 법원에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 요청서.

PETITIONER(신청인): 법원에 조치할 것을 공식 요청한 개인이나 단체.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식별번호): 뉴욕주 양육비 웹사이트(childsupport.ny.gov)와 헬프라인(888-208-4485)에서 양육비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배정된 고유한 식별 번호.

POVERTY LEVEL(빈곤선): 연방 정부에서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규정한 수준. 2021년 1인 빈곤선은 \$12,880입니다. 가정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4,540가 추가됩니다. 빈곤선 지침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aspe.hhs.gov/poverty-guidelines에 게시합니다.

PROPERTY EXECUTION(PEX, 재산강제집행): OCSS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 부모의 금융자산(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을 압류하는 행정 절차.

PRO RATA SHARE(비례 부담액): 보육비, 미환급 의료 지출 등 양육비 명령에 포함된 항목의 비용의 총액 중 각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PRO SE(본인 대변): 라틴어로 '혼자서'라는 의미.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PUTATIVE FATHER REGISTRY(PFR, 추정 친부 등재부): 뉴욕주가 보관하는 아버지 기록부. PFR에 저장되는 문서의 예로는 친자관계 인정서(AOP), 법원의 친자관계 수립 명령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친생자관계 관련 진술서가 있습니다. PFR은 상속, 입양, 자녀의 아버지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기타 법적 문제 발생 시 조회 가능합니다.

R

RECIPIENT(수령자): 현금 보조금, SNAP(푸드 스탬프), Medicaid 등 지원 금액 및/또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

RECIPROCITY(상호주의): 한 주 또는 카운티가 같은 권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주나 카운티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계.

RELIEF(구제): 법적 구제책.

RESPONDENT(피신청인): 신청에 응하는 자. 당사자가 어느 쪽이든 구제에 대하여 소송을 받은 자.

RETROACTIVE SUPPORT(양육비 소급): 자녀 양육비를 이미 지난 날짜에 대해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로 소급됩니다. 양육비가 소급되면 즉시 채무가 발생합니다.

S

SANCTION(제재): 위반 또는 협조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처벌. OCSS에서는 자녀 양육비 요건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현금 보조금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이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SELF-SUPPORT RESERVE(자기 부양 준비금): 한쪽 부모가 빈곤선 또는 그에 인접해 있을 때 뉴욕주에서 양육비 계산에 고려하는 요소. 자기 부양 준비금은 연방 빈곤선의 135%입니다. 2021년 기준 자기 부양 준비금은 \$17,388입니다.

STEP(Support Through Employment Program, 취업을 통한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실업 상태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비양육 부모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알선 서비스. STEP로의 위탁은 양육비 심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TIPULATION(약정): 케이스의 반대 측면에 대해 두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합의서.

SUMMONS(소환장): 수신자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음을 명시하는 통지문. 양육비 심리에 대한 소환장에는 출석 일시와 장소, 지참해야 할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UPPORT COLLECTION UNIT(SCU, 양육비수금부): 양육비 수금, 모니터링, 지출을 담당하는 양육비서비스사무국 소속 부서.

SUPPORT MAGISTRATE(양육비치안판사): 지역 가정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 양육비 케이스에 관한 증언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SUPPORT ORDER(양육비 명령서): 양육비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한 명령. 양육비 명령서는 한시적이거나 최종 결정일 수 있고, 정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서에는 금전 및 의료지원, 보육비, 교육비, 연체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구제 형식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

TAX REFUND OFFSET(세금 환급 상쇄): 양육비 채무를 갚기 위해 비양육 부모의 연방 또는 주 세금 환급이 이뤄지는 절차.

TERMINATE AN ORDER(명령 종결): 현재의 의무를 종결시키는 행위. 양육비 명령의 시행 종료일을 담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여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U

UIFSA(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통합 주간 가족 부양법): 전체 주에서 양육비 지급액을 받는 과정을 수월하게 하고자 1996년에 시행된 연방법. 이 법에 따라 주들은 양육비 명령 획득 및 시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주에 있는 고용주에 대해 직접 소득 원천 징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같은 케이스에 대해 여러 개의 양육비 명령서가 발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V

VACATE AN ORDER(명령 무효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전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

W

WAGE WITHHOLDING(급여 원천징수): IEX(소득 집행) 통지가 고용주에게 전달된 즉시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시작되는 것.

WILLFUL NON-PAYMENT(고의적 체납): 비양육 부모가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법원에서 지시한 자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NYCHRA



NYCHRA



NYCHRA

BK-4 (K)

Rev. 10/2024

© Copyright 2024. The City of New York,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제 허가를 받으려면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